

[별표 2] 소량위험물의 저장 · 취급장소의 시설기준(제4조 관련)
(지정수량 20%이상)

I. 공통기준

1.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,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. 다만, 위험물의 누설,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. 다만, 해당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
4.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
5. 온도계, 습도계, 압력계 기타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,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것
6.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
7.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
 - 가.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해당 배관의 최대용압력의 1.5배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할 것
 - 나.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
 - 다. 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. 다만, 해당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라.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. 다만,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마.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배관의 접합은 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 또는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

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할 것

바.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이 배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

8.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·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
9. 전기설비는 「전기사업법」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따를 것
10.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(탱크를 제외한다)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, 그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
11.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m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
12. 소량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할 것

Ⅱ. 세부기준(소량위험물에 한한다)

1.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및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
2. 위험물의 변질,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3.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·설비, 기계기구,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
4.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(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5.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·공구·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6.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

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7.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
8.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
9.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10.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
11.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
12.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의 종류·품명·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